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22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를 “부모”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국방의무자로서”를 “전입일 기준 2년 이상”으로 “복무”를 “복무(근무)”로 “(의무경찰”을 “(전환복무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위험 임신부 기형아(양수) 검사비”를 “임산부 양수 검사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하고,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영농정착 보조금,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등”을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정보 제공 등”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대시책의 협조·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대 운동의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대 정책·과제 발굴과 시행
3. 인구증대 시책 홍보 및 추진 협조

4. 그 밖의 인구증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유관 기관, 사회·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인구증대 시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 ⑤ 위원회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 로 한다.
-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p>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p> <p>나. 둘째아이 이상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p>	<p>·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p> <p>(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1년·2년·5년간 분할 지급하고, 넷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 후 각각 4년·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하며, 개정 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에 적용한다.)</p> <p>(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p>
2. 출산용품 구입비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하동사랑상품권.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임신부 양수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p>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p> <p>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p>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p>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p> <p>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p>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 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전입 세대. ·2인 : 30만원 ·3인 : 50만원, (다만, 2인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4인 이상 : 70만원.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
3. 전입학생 지원금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4.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복무(군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휴가비 :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6.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7. 전입세대 팸투어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8. 결혼식장 무료 대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9.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10. 농지 및 축사등 알선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11. 특별 영농교육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귀농자반 별도 편성 및 전문지도사 지역 담당제
12. 빈집정보 제공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별표 3]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 관련)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다둥이 안전보험	행정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정과	
	출산장려금	행정과	
	출산용품 구입비	행정과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행정과	
	임산부 철분제	보건소	
	임산부 양수 검사비	보건소	
전입세대 지원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실	
	전입세대 팸투어	문화관광실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관광실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행정과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정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정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영농정착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농업기술센터	
	특별 영농교육	농업기술센터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신분 청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계좌 정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양수 검사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성 명 : 20 년 월 일
(인/서명)